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8. 31 선고 2022가단10443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로 담당변호사 이은수, 최종석

변 론 종 결 2022. 7. 20.

판 결 선 고 2022. 8.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2020. 4. 7.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취소하고, 피고는 소외 C에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2020. 6. 16. 접수
제6359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2. 1. 23. D은행로부터 3,533,980원을 연체이율 19%로 정하여 가계대출을 받았다.

나. C에 대한 D은행의 채권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거쳐 E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F 주식회사)에 양도되었고, F 주식회사는 C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4가소2976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C은 F 주식회사에 14,001,627원 및 그 중 3,533,980원에 대하여 2014.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발령하였고, 그 즈음 위 이행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F 주식회사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받아 2022. 2. 5. 위 나.항 기재 이행권고결정문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라. C의 부친이자 피고의 남편인 G은 2020. 4. 7.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G의 상속인들(배우자 피고, 자녀 C, H, I, J)은 2020. 4.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20. 6.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다.

마. 한편,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C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6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C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 지분(2/11)을 피고에게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기하여 이전한 것은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협의는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사해의사가 없는 선의의 수익자이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가 C에 대해 판결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2) 사해행위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C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C이 피고 등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 지분을 포기하고 해당 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3) 선의의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C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항변한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4181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돌이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1973. 11. 28. 망인과 혼인한 이래 망인의 사망 시까지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영위하면서 약 47년에 이르는 장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하였고, 그 중 약 28년에 가까운 기간 이 사건 부동산에서 망인과 함께 거주해 온 점, ② 피고는 혼인생활 중 C 등 4명의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매수한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와 망인이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으로 매수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망인의 유일한 상속재산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액수가 특별히 거액이라고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을 통하여 C의 일반채권자들에게 책임재산으로 공여되는 액수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담보설정가액 및 C의 상속 지분(2/11)을 고려하면 소액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⑤ 피고에게 있어 C은 1974년생(상속 당시 46세)인 출가한 장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피고가 C의 재정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30년 이상 거주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현재도 계속 거주하고 있는 점, ⑦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원고의 채무자인 C 뿐만 아니라 망인의 나머지 자녀 3명 모두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고, 이는 자녀들이 피고의 여생을 위하여 뜻을 모은 결과로 보이는 점(이러한 상황에서 C이 자신의 상속 지분에 관한 권리를 얻기 위해 가족들에게 자신의 채무초과 상황을 공개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등과 더불어, 부부 중 일방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 자녀들이 남은 배우자에게 부부가 살던 부동산을 상속재산협의분할 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배우자로서 일생동안 망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취득·유지하고 자녀들에게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것에 대한 기여·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 복합적인 의미가 함께 담겨 있어, 그와 같은 재산 이전을 사해행위로 인정하거나 그 배우자를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인하여 C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사해의사가 없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현기

별지